KSD 한국예탁결제원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과 이용자간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자금융거래”란 예탁결제원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예탁결제원과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자적 장치”란 컴퓨터, 전용회선, 소프트웨어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한다.
4. "전자문서"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5.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용자가 거래지시를 하거나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 삭제 <2022. 6. 1.>
   나.「전자서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예탁결제원을 통해 발급하거나 그 밖에 예탁결제원이 인정하는 인증서
   다. 예탁결제원에 등록된 일회용비밀번호 생성기(OTP) 또는 이에 준하는 것
   라. 나목 또는 다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6. “거래지시”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의하여 예탁결제원에 전자금융거래

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7. “오류”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가 거래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8.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이란 예탁결제원이 이용자와의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업무시스템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전자금융거래법」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예탁결제원과 이용자 사이에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제4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처리”를 정한 예탁결제원의 개별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2. 6. 1.>

③ 삭제 <2022. 6. 1.>

④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서면으로 예탁결제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2008. 3. 6.>

제6조 삭제 <2008. 3. 6.>

제7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 예탁결제원이 접근매체를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2. 6. 1.>

③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비밀번호 등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계약일 포함 2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접근매체의 발급 제한) 예탁결제원은 이용자의 업무 성격 및 접근매체 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접근매체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접근매체의 사용 등) ①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예탁결제원이 발급 또는 교부한 제2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접근매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수령한 후 제7조제3항에 따라 비밀번호를 등록하고 수시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접근매체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직접 방문 후 재설정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이용자 본인이 방문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의 예탁결제원 소정의 양식에 따른 위임장 제출로 본인의 방문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이용자는 접근매체의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근매체의 분실,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제10조(이용시간 등) ① 이용자는 예탁결제원이 정한 이용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이용시간은 예탁결제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예탁결제원이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영업점, 예탁결제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 간 알려야 한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프로그램의 긴급한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산시스템 유지 및 보수로 인하여 전자금융거래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예탁결제원은 동 사실을 7일 전에 영업점, 예탁결제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한다.

제11조 삭제 <2009. 12. 31.>

제12조(거래의 성립)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함에 있어 거래의 성립 시기는 해당 업무에 대한 예탁결제원의 업무규정에 따른다.

제13조(거래내용의 확인) ① 예탁결제원은 이용자가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예탁결제원은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즉시 그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인한 거래내용이 일치하는지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예탁결제원이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거래내용 확인 조치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 이용자는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예탁결제원에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예탁결제원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이용자에게 교부한다.

④ 삭제 <2022. 6. 1.>

제14조(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1. 거래관련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하였거나,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이용자가 모르는 경우
2.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인증서 효력이 정지되어 재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3.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예탁결제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적 장치 등에 장애가 발생한 때
4. 천재지변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의 거래지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5.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할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 지시가 있을 때 예탁결제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제15조(오류의 정정)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예탁결제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예탁결제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제4항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예탁결제원이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제4항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예탁결제원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알릴 때, 서면,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알린다.

제16조(사고·장애 시의 처리) ① 이용자는 접근매체의 도난, 분실, 위조,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

는 지체 없이 이를 예탁결제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전산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이용자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동 사실과 사유 등을 이용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제17조(예탁결제원의 책임) ① 예탁결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예탁결제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예탁결제원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삭제 <2022. 6. 1.>
5. 예탁결제원이 제7조에 따른 접근매체를 통한 이용자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6. 이용자가 제5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③ 예탁결제원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④ 예탁결제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18조(신고사항의 변경) 이용자가 예탁결제원에 신고한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삭제 <2022. 6. 1.>

제20조(이용자정보에 대한 비밀보장) ① 예탁결제원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안된다.

② 예탁결제원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예탁결제원이 책임을 진다.

제21조(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법령 및 예탁결제원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용자는 예탁결제원의 사전 승인없이 예탁결제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 또는 가공하여 판매·대여 및 그밖에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③ 이용자는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결제원이 지정한 자가 전자적 장치 점검 기타 장애복구 등을 위한 방문 시 관계자의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른 예탁결제원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 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기·오산·누락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보하거나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예탁결제원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손해배상)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이 약관을 위반하는 등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예탁결제원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23조(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예탁결제원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예탁결제원은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며, 그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가 예탁결제원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예탁결제원은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④ 이용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예탁결제원의 사고조사와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 삭제 <2022. 6. 1.>

제25조 삭제 <2022. 6. 1.>

제26조(거래기록의 보존 및 파기) 예탁결제원은「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거래기록을 생성하여 5년의 범위 안에서 보존하고, 보존 기간이 경과하여 금융거래가 종료된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하여야 한다.

제27조(약관의 명시와 교부 등) ① 예탁결제원은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직접 설명하여야 한다.

제28조(약관의 변경 등) ① 예탁결제원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예탁결제원이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및 예탁결제정보통신망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예탁결제원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탁결제원이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예탁결제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동안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 예탁결제원은 이용자가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제27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교부한다.

제29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등) ① 예탁결제원과 이용자 간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서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해서는 이 약관을 우선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탁결제원의 업무규정, 예탁결제원의 '전자적업무 처리를 위한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지침' 및 「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일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약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별표] 삭제 <2009. 12. 31.>